

●문화재청공고제2013-318호

문화재보호법 제53조, 제59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「서울 공간사육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.

2013년 12월 20일

문 화 재 청 장

1. 공 고 명 : 문화재 등록 예고
2. 등록문화재 내용

문화재 명칭	소재지	수량·규모	소유자
서울 공간사육	서울 종로구 원서동 219	1동(구사육)	(주)공간건축사사무소

나. 등록 사유

- 구사육은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작품으로 1971년 6월 처음 완공되어 그 해 12월에 구관의 전세 골조공사가 완성되었으며 1975년 5월 신관의 증축이 이루어져서 1977년 4월 완공되었다.
- 외관은 검은색 벽돌 벽체로 구성된 기하학적 입방체(Mass)들이 상호 결합되어 형성되었으며, 내부는 인간적 척도(Human Scale)를 기본으로 적절한 규모로 계획된 공간들이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상호 연결되는 등 재료, 형태, 공간 등 건축의 기본적 구성요소 전반에 한국 전통 건축의 본질적 특성을 현대적 기법으로 해석하고 구현함으로써, 한국 현대건축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.

3. 등록 예고일 : 관보 공고일

4. 등록 예고기간 :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

5. 의견제출

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(異見)이 있으실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형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기재 사항

-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(한·반 의견과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·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「문화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cha.go.kr>) / 새소식 / 문화재지정예고」에 등록

다. 연 락 처

- 전 화 : (042)481-4896
- 팩 스 : (042)481-4899
- 전자우편 : candleyb@korea.kr
- 주 소 : (우 302-701)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과

●농촌진흥청공고제2013-184호

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(MON87427) 위해성 심사결과

2013년 12월 20일

농촌진흥청장

문선도코리아 유한회사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「제조제저항성(조직선택적 발현) 옥수수(MON87427)」는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」 제4-8조 및 제4-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「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」에서 심의한 결과 「비의도적 발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」 되었으며,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(kabic.naas.go.kr)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●농촌진흥청공고제2013-185호

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(F672) 위해성 심사결과

2013년 12월 20일

농촌진흥청장

바이엘크롭사이언스 주식회사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「디블레조제저항성 콩(F672)」는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」 제4-8조 및 제4-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「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」에서 심의한 결과 「비의도적 발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」 되었으며,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(kabic.naas.go.kr)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●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13-2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등 공고

증권선물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.

2013년 12월 20일

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

1. 처분 대상자 및 내용

가. 증권발행제한

대상자	주변(사업)등록번호	처분원인	처분내용	처분근거
(주)알에스엠	106-85-*****	상장법인 등의 신고·공시의무 위반	증권발행제한 3월	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제2항

2. 상기 증권발행제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등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로 제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,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
※ 담당자 :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확원일 사무관 (☎02-2156-3311)

●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3-40호

농수산물관질관리법 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저리척표시의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